

크레센트시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 정책

City of Crescent City
377 J Street
Crescent City, CA 95531
707-464-6517

1.0 총칙

- 1.01 발효 날짜. 이 정책은 2020년 2월 1일부로 유효합니다.
- 1.02 접근성. 이 정책 그리고 이 정책에 따라 발급된 모든 통지서는 다음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몽골어.
- 1.03 웹사이트 게시. 이 정책은 시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 1.04 문의. 체납 계정에 대한 납부 방법, 청구서 이의제기 방법을 상담하고 싶거나 이 정책에 대해 기타 질문이 있는 경우 시 수도국 전화 707-464-6517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1.05 연간 보고서. 시는 납부 불이행으로 인해 주거용 수도 공급이 중단된 연간 중단 건수를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웹사이트에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 1.06 행정 관리. 이 정책은 재무감독의 행정 관리를 받습니다.
- 1.07 정의. 이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적용합니다.

- a. "날수(Days)"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달력 기준 날수를 의미합니다.
- b. "재무감독(Finance Director)"은 시의 재무 감독자 또는 이를 위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c. "점유자(Occupant)"는 시로부터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에 거주하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2.0 수도 청구서 이의제기

- 2.01 이의 신청. 수도 고객이 수령한 수도 청구서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청구서와 이에 담긴 부정확성에 대해 서면 작성한 이의제기서를 수도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인쇄된 납부 기한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수도국에 제출해야 이의 내용을 조사하는 동안 수도 제공이 중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02 이의 판정. 수도국은 청구서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면 부정확성 주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재무감독에게 제출합니다. 재무감독은 고객의 이의 그리고 수도국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i) 청구서 유지 또는 (ii) 부정확한 청구서 수정을 결정합니다. 재무감독은 시가 수도 청구서 이의를 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2.03 시의회 상고 신청. 수도 고객은 해당 결정이 우송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 서기관에게 서면 상고서를 제출하여 재무감독이 이의제기에 대해 내린 결정을 시의회에 상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번 적절한 의회 회의에서 고객의 이의제기를 검토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시의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당 고객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납부 합의에 들어가거나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유지되는 원 청구서 또는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된 청구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수도 공급을 중단할 것입니다. 시의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2.04 결정 대기 중 수도 공급 해지 금지. 시는 분쟁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쟁 중 청구서 체납으로 이유로 고객에게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3.0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 절차

3.01 기한 날짜 및 연체료. 크레센트시 지방자치법(Crescent City Municipal Code) 제 13.12.150 항에 따라 수도 청구서를 제시 받으면 납부 대상이 되고 청구 날짜로부터 20 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 됩니다. 연체 청구서에 대해 매월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연체료 부과금은 Fee Schedule 내 시의회 결의안으로 설정합니다.

3.02 60 일 체납. 시는 60 일 동안 연체될 때까지 체납을 이유로 주거용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3.03 7 일 통지. 시는 체납으로 인해 주거용 수도 공급을 중단하기에 앞서 영업일 기준 최소 7 일 전에 전화 또는 서면 통지로 계정 명의 고객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3.03.1 전화 연락. 시가 전화로 고객에게 연락하는 경우, 시는 고객에게 서면 작성한 본 정책 제공, 체납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 방지를 위해 가능한 대체 납부 옵션 상담, 요금 청구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 제안해야 합니다.

3.03.2 서면 통지. 시가 서면으로 고객에게 연락하는 경우, 서면에 체납 통지 및 공급 중단 임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주거용 수도가 공급되는 거주지 고객에게 우편 발송합니다. 고객 주소가 주거용 수도가 공급되는 부동산의 주소가 아닌 경우, 주거용 수도가 공급되는 해당 부동산 주소에도 '점유자' 명의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a. 고객 이름과 주소

- b. 연체 금액
- c.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금을 납부 또는 납부 조정해야 하는 기한 날짜
- d. 연체 요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 e. 고객이 연체 요금 납부 계획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 f. 청구서 또는 요금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 설명

3.03.3 선의의 노력. 고객 또는 거주지를 점유한 성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고 서면 통지가 수취 불가로 반송된 경우, 시는 해당 거주지를 방문하고 체납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 임박 통지서와 시의 공급 중단 정책을 눈에 띄는 장소에 남기기 위한 선의의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03.4 통지서 게시. 시가 해당 구내에 거주하는 성인과 전화 또는 대면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시는 수도 해지에 앞서 최소 48 시간 전에 해당 건물에 통지서를 게시하여 이를 알려야 합니다.

3.04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 금지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는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 a. 수도 공급 중단이 수도가 공급되는 건물 거주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증명하는 1 차 의료 기관(WIC 14088 (b)(1)(A)에 규정)의 인증서를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이 시에 제출함.
- b. 정상 청구 주기로는 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정이라고 고객이 스스로 증명함. 고객 가구 구성원이 현재 Cal 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사회보장 보조/주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조금 프로그램(WIC) 수급자이거나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고객은 정상 청구 주기로는 주거용 수도 요금을 납부할 재정이 아닌 것으로 간주 받습니다.
- c. 고객이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시에서 제공하는 대체 납부 계획을 체결하고자 함.

- 3.05 납부 옵션. 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하나 이상의 납부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a. 고객이 상기 3.04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는 고객에게 하나 이상의 대체 납부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4.01 을 참조하십시오.
 - b. 고객이 상기 3.04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지만 정상 납부 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는 고객에게 하나 이상의 대체 납부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4.02 를 참조하십시오.
- 3.06 상고 기간 중 공급 중단 금지. 거주지의 성인이 수도 청구서에 대해 상고 신청하거나 대체 납부 계획에 관한 재무감독의 결정에 반대를 호소하는 경우, 시는 상고 진행 중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3.07 납부 계획 기간 중 공급 중단 또는 연체료 부과 금지. 고객이 납부 계획을 체결한 경우, 시는 고객이 납부 계획을 준수하는 동안 주거용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는 고객이 납부 계획을 준수하는 동안 고객 납부 계획에 해당하는 연체 잔액에 추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이 납부 계획을 체결한 이후 체납한 후속 청구서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3.08 수도 공급 복구.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시는 공급 복구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1) 체납 잔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2) 시가 승인한 대체 납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는 다음과 같이 수도를 재연결하기 위해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a. 오전 중에 요청이 들어온 경우 당일 영업일 정상 근무 시간 동안 재연결,
 - b. 그 외에는 다음 영업일 시 정상 근무 시간 동안 재연결.

4.0 체납 계정에 대한 납부 옵션

- 4.01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 납부 옵션. 시는 3.04 에 나열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대체 납부 옵션을 하나 이상

제공합니다. 시는 납부 옵션과 그 납부 옵션의 매개변수 제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 기간 연장. 고객은 체납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5 일 간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b. 할부 납부 계획. 고객은 2 - 12 개월에 걸쳐 잔액을 할부하는 납부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금액에는 해당 계정에 있는 모든 연체 금액이 포함되며 고객은 할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i. 최소 납부액. 할부 납부 계획의 최소 납부액은 월 \$20.00 입니다.
 - ii. 할부 납부 계획 기간. 일반적으로, 할부 납부는 12 개월 내에 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이 겪을 부당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는 최대 12 개월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c. 납부 계획은 수도 공급 중단 이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대체 납부 옵션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은 수도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4.02 그외 고객을 위한 납부 옵션. 시는 3.04 에 나열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정상 납부 기간 중에 잔액 납부할 재정 능력이 없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납부 옵션을 하나 이상 제공합니다. 시는 납부 옵션과 그 납부 옵션의 매개변수 제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 납부 지연 또는 삭감. 고객은 체납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5 일 간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b. 할부 납부 계획. 고객은 2 - 4 개월에 걸쳐 잔액을 할부하는 납부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금액에는 해당 계정에 있는 모든 연체 금액이 포함되며 고객은 할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i. 최소 납부액. 할부 납부 계획의 최소 납부액은 월 \$20.00 입니다.
 - ii. 할부 납부 계획 기간. 일반적으로, 할부 납부는 4개월 내에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이 겪을 부당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는 최대 12 개월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c. 납부 계획은 수도 공급 중단 이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대체 납부 옵션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은 수도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시에 요청해야 공급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03 현재 청구서 납부 필수. 체납 청구서에 대한 대체 납부 옵션에 참여하는 고객은 모든 후속 청구서에 대해 정해진 기한에 전액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60 일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4.04 에 따라 5 일 동안 통지 후 수도 공급이 중단됩니다.

4.04 5 일 게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시는 해당 부동산에서 눈에 띄고 분명한 장소에 수도 공급 중단 최종 통지서를 게시하며 그로부터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는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a. 고객이 60 일 이상 체납 요금에 대한 대체 납부 계획 체결 불이행.
- b. 할부 계약, 대체 납부 일정, 납부 계획에 따른 납부 지연 또는 삭감 진행 중 고객이 60 일 이상 현재 주거용 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

5.0 주거 점유자에 대한 특별 조항

5.01 서면 통지. 분리된 단독 세대 주택, 다세대 주거 구조물 이동 주택 공원 또는 개별 계량 서비스를 받는 노동 수용소의 영구 주거 구조물에 거주하는 거주

점유자 및 소유자는 기록상 고객이며, 체납이 있을 경우 시는 수도 해지에 앞서 최소 10 일 전에 수도 공급 중단을 알리는 정보를 서면으로 주거 점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면 통지는 거주 점유자가 체납 계정에서 발생한 체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수도 요금 신규 청구 대상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 5.02 점유자 수도 사용 가능성. 각 주택 점유자가 공급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가 거주 점유자에게 수도를 공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 서비스가 특정 기간 동안 시 수도국과 신용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인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동등성을 만족하려면 거주 및 임대료 최근 지불 내역 또는 기타 신용 의무 증거 등 시가 수용 가능한 것을 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 5.03 검증. 분리된 단독 세대 주택의 경우, 체납 계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면제하려면, 신규 고객이 될 점유자가 현재 또는 과거에 집주인, 관리자 또는 주거 대리인인 기록상 체납 계정 고객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으로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했음을 증명하는 임대 계약서, 임대 영수증, 정부 서류 또는 민법 1962 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 등이 있습니다.

6.0 저소득층 고객 대상 추가 조항

- 6.01 거주 고객 가구 구성원이 현재 Cal 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소득보장 보조/주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조금 프로그램 수급자이거나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고객은 이 항목에서 취급하는 "저소득층"으로 간주됩니다.
- 6.02 시는 저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Water Shutoff Protection Act(단수보호법, 현재 \$50.00, CPI 에 따라 인상)에서 허용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재연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보다 적은 경우 시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 이외의 재연결의 경우, 시는 저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Water Shutoff Protection Act(단수보호법, 현재 \$150.00, CPI 에 따라 인상)에서 허용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재연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보다 적은 경우 시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6.03 시는 저소득층 고객을 위해 12 개월마다 한 번씩 체납 요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면제하여야 합니다.

7.0 제 3 자 알림 서비스

7.01 시는 65 세 이상 또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복지 및 기관법) 제 15610 항 세부 항목 (b)의 (1)에 규정에 따라 피부양 성인인 거주 고객을 위해 제 3 자 알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은 시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시에 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7.02 7.01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프로그램 등록을 요청한 고객의 경우, 시는 고객 계정에 연체가 발생해 해지 대상이 되었을 때 고객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 수령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수도 해지 방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지는 제 3 자에게 체납 요금 납부 의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도 해지 방지 또는 지연을 의무지우지 않습니다.

8.0 해지 날짜 및 시간.

8.01 시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휴일 및 기타 시청 휴무일에 주거용 수도 공급 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 중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날 재연결 서비스 요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일 오전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